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1일, 안상훈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3.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3.1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상훈 의원)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면서
서도,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

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무작위 표본조사의 방식으로도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 또는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된 경우 해당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였거나 탑승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승무원이나 탑승객이 검역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검역조치의 수행 여부를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검역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찬)

개정안은 출입국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병원체 등이 발생한 경우 탑승객이나 탑승 예정객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는 한편, 검역감염병 병원체 등이 확인된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하여는 검역조치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검역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탑승 예정자나 탑승객에 대하여 감염병 병원체 발견 사실 등을 통지함으로써 자발적인 검사 및 진료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통지 대상 감염병을 모든 검역감염병으로 하고 있으나, 대상 감염병의 전파력, 위험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일반 탑승자에 대한 통지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